

학생인권조례, '민주진보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현실화가 한층 가까워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본격 추진하고 이에 대한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올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여러 지역에서 공동 공약으로 등장했고, 지난 5월 10일에는 12개 지역 '민주진보교육감'이 공동으로 조례 제정을 약속하는 협약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박노현 교육감의 경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는 '반(反)교육'이다, '좌빨 교육감의 학교 장악 시나리오'다 등의 온갖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경기도교육위는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단 이유를 들어 조례 심의조차 유보시켰다. 왜 학생인권조례는 그들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학교를 뒤흔드는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학생인권조례, 어떤 내용이 담기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는 체벌, 언어폭력, 강제이발, 강제야자·보충, 종교강요, 성적에 따른 지원 차별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농축돼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국제인권기준이나 변화한 사회인식에 따르면 분명 문제적인 행동이 '교육'이나 '관행', '필요악' 등의 명분으로 덮여지거나 인권침해임이 인정되지 않아왔다. 그 때문에 생활지도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숨바꼭질은 가속화되고, 학생은 학교와 교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 참여, 복지, 안전 등에 대한 권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명시적·음성적 형태의 각종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할 이유다.

기준만 있다고 학교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 막상 인권문제가 일어나도 구조적 약자인 학생·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학교장 독단으로 학생인권을 후퇴시킬 조치가 취해져도 막상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 교육청의 민원 해결 방식은 너무 굵뜨거나 미온적이고 사법기관은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문제 해결을 전담하여 조사·해결하는 권리구제기구를 별도 설치하고, 권한과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하도록 단위학교를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계획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만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조치들과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반대편엔 무엇이 있나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건 학생회장 후보가 학교의 탄압을 받아 징계위기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하지 말라는 교장과 학생부장의 '지도'에 따라 후보 연설문을 수정해야만 했던 학생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써서 학생들에게 돌렸다. 학교는 학생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위원회를 여는 보복을 감행했다. 이 사건을 보면 보수진영이 왜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흔히 생각하듯 학생인권조례의 반대편에는 '교권'이 놓여있지 않다. '무질서'도 아니다. 학생인권의 반대편에는 '강압'과 '독재'가 놓여있다. 보수진영은 학생 위에 군림하는 학교가 깨지는 것을,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의문을 갖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의 주역이었던 10대들을 다시 학교 안으로 잡아들이기 위해 학교규정과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교육이 강화됐던 이유다. 학생인권조례의 또 다른 반대편에는 특권과 차별이 놓여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문 안으로 들어올 때 '합리적 경쟁'의 외양을 쓰고 진행되는 '특권의 재생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진다. 가혹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만 선별 지원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부진아, 부적응아, 문제아 등의 딱지를 붙여 학교 밖으로 내모는 시스템의 나사들이 하나씩 인권문제로, 차별문제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학교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특권교육정책의 정당성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피폐해지고 폭력화된 학생-학생, 교사-학생, 학부모-학생 간의 관계를 본디 자리로 되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생인권침해는 학생에 대한 불신 없이는 생산, 유지될 수 없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흔히 택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무력화되거나. 이런 경험을 내재화한 사람이 성인이 되면 곧장 '자유롭고 책임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제정이라는 실천이 '민주진보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참고자료 1>

교권의 재구성
: 가르칠 권리와 배울 권리의 동시 존중 방안 모색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2009년 12월 언론보도를 보니,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여교사 2명의 손바닥을 30센티 자로 때렸다는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준 적 있다. 또 그 얼마 전에는 학생이 여교사를 희롱하는 말을 건네는 동영상에 유포돼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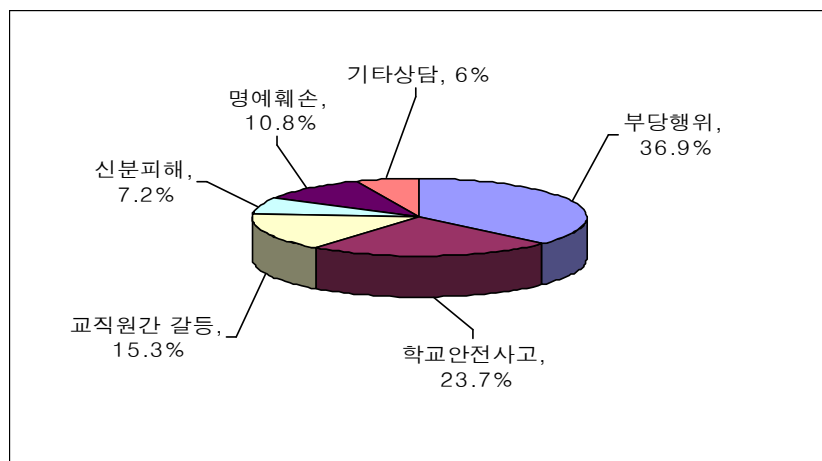
전교조가 2009년 9월 발표한 교권상당 자료를 보면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 둘째를 예정보다 일찍 출산해 휴직 연장을 신청했더니 교장선생님이 불쾌하게 전화를 받은 뒤 출산증명서를 갖고 직접 학교에 오라고 지시했다. 삼칠일도 되지 않아 학교에 갔는데 교감선생님이 회의 중이라며 2시간을 넘게 기다리게 했다.”

“저희 반 남학생 두 명이 3개월 동안 욕설을 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험담을 퍼뜨린다.”

“반 아이가 방과후 활동 중 2층 화장실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매일 병문안을 가서 학생의 건강도 확인했다. 그런데 오늘 학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하더라.”

2008년 한해 동안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상당 통계를 보면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협박 등 부당행위가 1위를, 교직원 사이의 갈등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대체 교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1. 교권과 학습권의 구체적 내용

1)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 침해됐다고 이야기할 때 흔히 교사의 권위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권위와 권리는 다른 말이다. 교사의 권위는 그 사람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인 만큼, 상대방에게 교사의 권위를 존중할 법적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반면, '권리'라는 것은 권리의 내용과 권리의 주체,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대상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이 글이 살펴보고자 하는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로서의 교권이다.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교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교사라는 신분을 보장받고 존엄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교육할 권리(수업권)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교사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신분과는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공간 안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연애의 목적>을 보면 교사들 사이의 연애 관계가 학교에 널리 알려지고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 담당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다거나 한 교사가 가진 종교나 생각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이 가해졌다면, 이는 어떠한 개인이든 누려야 할 인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권리들은 학교공간 안에서도 전면 보장되어야 하며, 설령 제한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보장받고 존엄하게 일할 권리이다. 신분상의 권리에는 부당한 신분 박탈이나 보직 변경을 당하지 않을 권리, 교원단체와 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권리, 정당하고 존엄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권리, 교원단체를 통한 정치행위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립고등학교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같은 재단 소속의 중학교로 교사를 내려 보낸다거나,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특정 보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시킨다든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신분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 신분을 보장받고 존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는 일반적 인권과는 구분되지만, '노동자의 권리'로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따라 기본권으로서 보호받는 권리이다. 이 또한 교사의 인권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교육행위와 관련된 '가르칠 권리'(수업권, The Right to Teaching)가 있다. 가르칠 권리는 교사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고 교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한이다. 가르칠 권리는 이른바 '교육의 자유'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권'으로 구성된다. 교육의 자유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결정·편성하고 교재를 선택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리자나 교육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수업 참고자료조차 교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

다고 한다든지, 예정된 수업시간이 갑작스레 동의도 없이 학교나 교육청 행사 참여 시간으로 강제된다든지 한다면, 이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교권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다른 교육구성원의 인권과 다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반면 세 번째 권리는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권리인 만큼, 교사라는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보장된다. 따라서 이때의 교권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인권보다는 하위에 위치하는 직무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교사의 수업권(교육할 권리)은 '교사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직권'(직무상의 권리)라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직무상의 권리는 관련된 상대방, 특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한성을 갖게 된다. 경찰이 그 지위로부터 비롯되는 체포권, 수사권 등을 행사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이거나 고문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상의 권리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전제되지 않은 한 함부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

그런데 한 사회 안에서도 권리를 잘못 행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자기의 인권이나 직무상의 권리를 잘못 행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과도하게 혹은 부당한 방식으로 행사할 때, 그것은 권리의 남용이 된다. 또한 교사임을 내세워 권위에 대한 일방적 존경을 요구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로 비친다. 이런 상황들을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옹호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면 교권은 교사의 부당한 권력 또는 권력 남용과 동의어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내비치는 데에는 '교권=교사의 일방적 권력'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2) 학습권이란 무엇인가?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P'라고 불리는 4개의 일반 원칙에 기초해 있다. Protection(보호), Prevention(예방), Provision(제공), 그리고 Participation(참여)이 그것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에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이야기하는 교육권의 핵심은 학습권(The Right to Learning)이다. 인권으로서의 학습권이 보장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4개의 A가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가 이용할 만한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Availability) △교육기회에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차별없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Accessibility) △학생의 최상의 이익과 변화하는 사회조건에 따라 교육이 융통성있게 조율될 수 있어야 하며(Adaptabil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양과 질, 학교의 분위기가 학습자가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Acceptability)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학생인권은 학습권 보장의 필수요건임을 알 수 있다. '존엄하게 대우받고 육체적·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생인권이라고 한다면, 학교규율을 통해 학생의 존엄을 부정, 침해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학습권과 교권의 상관 관계

그렇다면 학습권과 교권은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 있을까?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떠올려보았을 때, 어떤 관계에서 주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은가? 대개 인권문제는 상하 권력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한 사람이 늘 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자리잡고 있지만, 그 여성은 다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상대적 강자의 위치일 수 있다. 흔히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설 일용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 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해 이주해온 이주노동자에 비해서는 상대적 강자의 위치일 수 있다. 또 사회적 약자로 흔히 얘기되는 노인 중에서도 재산이 많은 노인은 오히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권문제를 둘러싼 관계는 다층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교사 사회만 보더라도 교장이나 교감은 평교사에 비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 교장이 나이 많은 남성 평교사를 대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이라는 지위가 교장이라는 지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교권과 학습권의 관계를 살펴보자. 강요된 0교시나 야자 시간에 학생들이 모두 책상 위에 엎드려 쪽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자. 학생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생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교사의 인권도 동시에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 아침, 늦은 밤 시간의 교육은 교사의 연장 근무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다. 0교시, 야간학습이 강요되는 학교에서는 교사에게도 학생 감독을 이유로 이른 출근, 늦은 퇴근을 요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학습권이 존중될 때, 교사 인권도 더불어 존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등학생들에게 최룡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처사진

얼마 전 많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던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사건의 한 장면이다. 남학생이 젊은 여교사에게 "누나 사귀자"는 식으로 농을 건네고 있다. 여교사가 제지해도 남학생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많은 분들이 '교권 실추'를 우

려했다. 그런데 여학생이 남교사에게 이런 방식의 농을 건네는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 반대의 경우를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학생-교사' 관계가 아니라 '남성-여성' 관계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사건을 교권 문제로 접근했을 때,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 여교사는 학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무능 교사'라는 낙인까지 짊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성인권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본질적이다. 물론 이 사건에서 교사에게 '도전'하는 학생의 모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 중에는 앞잡아볼 만한 교사에게 도전함으로써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그 표적은 주로 신규 여교사가 되곤 한다. 왜일까? '신규'(the Beginner)라는 약자적 지위, '여성'이라는 약자적 지위를 꿰뚫어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들의 밑바닥에는 교사-학생이 아닌 다른 권력관계가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2009년 6월에는 대구에서 지자체 행사에 학생 1만 5천명을 강제로 동원해 말썽을 빚은 사건이 있었다. 이런 지차체처럼 교육과정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석시키는 일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해당 교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잦다. 이때 교사의 '가르칠 권리'(수업권)도 동시에 침해되고 있다. 만약, 해당 교사가 자체 판단하여 행사 참여를 결정했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이때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변경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교사의 수업권을 남용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교실 바깥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교사는 물론 학생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도 학생과 교사 모두의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고 그 교육은 학생의 배움에도 해악이 된다. 이때 교육이라는 배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타고 있다. 교육이라는 배가 풍랑과 해적의 노략질로부터 자유로워야 그 배에 타고 있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가르침과 배움의 이중주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에게 특별히 보장되어 있는 '불체포특권' 역시 교권과 학습권이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교사에게는 일반 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고 있는데, 현행법이 아닌 한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교사 신분과 직무수행의 임의적 박탈을 예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마련된 권리이다. 이처럼 학습권과 교권은 상호대립적이라기보다는 외려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시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학습권, 아니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듯 보이는 장면들은 대개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일어난다. 학생 지도권은 교사의 직무상 권리 가운데 하나로 흔히 일컬어진다. 그런데 이 학생 지도권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는 '학교규율은 학생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교의 운영자·교사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상 의무에 충실한 상태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교사의 학생지도가 정당한 목표와 방법에서 벗어난다면, 이는 정당한 교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때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한 경우가 아니라, 교권이 잘못 행사된 경우라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 정당한 학생 지도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터질 수 있다. 목표도 방법도 정당했지만, 학생이 보인 반응이 교사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당연히 있다. 그럴 때 교사로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때 교권의 반대편에 학생인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학생은 인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외려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상처들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출산의 고통으로 몸을 뒤틀다 의사를 할퀴거나 가족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여성의 행동을 보고 인권침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때는 교권을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뿌리에 해당하는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물론 교사에게 상처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러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학생도 있다. 그건 아마도 교사가 상처를 받으면 아파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강자'나 '권력자'로 보이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 경우에도 교권을 앞세우기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고 교사 역시 상처받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결국 학생인권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내맡겨둘 수 없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받는 교사들의 부담과 상처도 만만치 않다. 학생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교사를 문제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에게 인권이 존중되는 경험을 제공함과 아울러 교사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의 기준이 명확해져야 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를 자치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몇몇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등교시간, 서울의 한 사립 중학교 앞에서 이 학교 교사들이 요강을 들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학생에게 똥 쌀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이 교사들의 요구였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 수에 비해 화장실 개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라 학생들이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수업시간 중에 화장실에 달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수업에도 많은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 번 재단측에 건의해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자 교사들이 요강을 들고 나왔다. 이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늦는 학생을 야단치거나 수업시간 중 화장실에 가는 학생들을 붙잡아 놓는 것이 학생들의 고통을 배가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학생을 잡는 일이 아니라 학교의 시스템을 고치는 일을 택한 것이다. 물론 사립학교다 보니 교사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 또는 부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만약 교사들의 신분이 좀더 안정돼 있었다면 더 일찍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할 교육환경 기준이, 학생인권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강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애초 요강을 들고 교문 앞에 서야 할 이유도 없었을지 모른다. 이처럼, 학생인권과 교권은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유네스코 주최로 인도 다카르(Dakar)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채택됐다.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 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여전히 마음에는 거부감이 일 수 있다. 학생을 교사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사는 많지 않다. 학생을 인격체로, 인권의 주체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완전무결한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미성숙한 지점이 존재하고, 성숙의 완성은 생의 마감하는 순간까지 오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절의 학생지도 방식이 나름 의미도 있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의미도 효과도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학생과의 관계, 새로운 학생 지도 방식을 요구한다. 학생을 더 잘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인권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영역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제지하고 폭력의 원인을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 방안을 찾으려면 먼저 교권을 다시 정립하고 학생지도의 목표와 방식도 재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 최종안 해설과 분석

- 작성: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분석 대상 조례안]

- 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A안과 B안 두 가지로 최종안 제출. 이 중 B안으로 교육청은 입법발의 하였음. 두 안의 차이와 제기됐던 논쟁을 살펴보기 위해 자문위원회 최종안을 분석 자료로 삼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한 바 있음. 지침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국제인권조약과 조약기구들이 제시한 바 있는 학생인권에 관한 기준, 유엔회의 결의문, 유니세프 '아동친화적 학교'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검토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0가지 열쇠말'을 뽑아냄. 이 10가지 열쇠말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으로 채택됨.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 모욕과 폭력이 없는 학교 -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데 있다.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47항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 : 배제와 강요가 없는 학교 - 학생의 참여는 권리이다.
- : 형식적 참여, 명목적 참여, 장식적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이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12항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 차별과 획일이 없는 학교? 학교는 호 사랑해야 한다.
- : 모든 학생은 차이를 존중받는 교육에



4. 감당할 만한 교육

- :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생은 학습할 능력을
마 자모된 교육에 의해 하스 느려오 익어배리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 자유를 통해 책임을 배우는 학교? 학생은 인격과 자유를 존중 받을 때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7항

6.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 학습뿐 아니라 삶을 돌보는 학교? 학교는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이다.

: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들어오기 이전 상황과 학교를 떠난 이후 '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유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 자유와 보살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학생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 학생 권리의 이행에는 학생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폐쇄공간이 아니라, '마을'에 열려 있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 보장,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제휴와 연대의 발전을 환영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긍정적인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59항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 학생인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학생인권 보장은 시스템을 갖춘 학교

: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10. 권리 구제에 대한 보장

: 학생 인권이 의미 있으려면 권리 침해가 있거나
저하 후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조례안의 구성]

장	장의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조례의 목적, 개념 정의, 학생인권보장 일반 원칙, 교육관계자의 책무, 교육관계자의 교육환경개선 노력의무
제2장	학생의 인권	○총 10개의 절과 23개 하위 권리조항으로 구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제2절), 교육에 관한 권리(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제4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5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6절), 복지에 관한 권리(제7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8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제10절)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의날(제29조), 인권교육과 홍보(제30조~제33조),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인권실천계획 수립(제34조~35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6조~37조),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제38조), 시민활동 지원(제39조) 등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제40조~44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제45조 ~47조) 등
제5장	보칙	학교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제48조) 등
부칙		조례 시행일(제1조), 경과조치(제2조)

[각 조항의 의미와 검토사항]

■ 눈여겨볼 지점들

- ✓ 조례안의 내용은 인권침해에 취약한 조건에 놓인 소수 학생들의 상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는가?
- ✓ 조례안의 내용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 향후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 ✓ 조례의 각 조항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예)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의 자유/ 다문화가정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습권 등
- ✓ 학교의 역할, 교육청의 역할을 잘 구분해서 제시하였는가? 추상적인 노력 의무 조항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가?

■ 내용과 쟁점 검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비
- ☞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법으로서 조례의 근거 법률로 명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 초·중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등이 포함됨
- ☞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퇴학 여부를 다루는 사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 ☞ [쟁점] 비인가 대안학교, 징계의 일환으로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하는 위탁교육기관도 이 조례가 규정한 ‘학교’에 해당하는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 ☞ 조례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열거되지 않은 권리 내용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그 제한 방식도 ‘학생이 참여한’ 상태에서 제정된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요건을 둠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

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육감의 학생인권 실현 노력 의무를 명시
- ☞ 2항은 초중등교육법 18조4항의 내용을 옮겨오되, 보호자의 노력 의무도 포함시킴. 우리 사회가 학교만 문제삼는다는 학교 관리자 등의 의견이 비등함에 따라 가정교육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
- ☞ 학생의 책무 조항을 삽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내부 논쟁이 있었으나, '학생에게 권리만 줄 뿐 책임은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자기 인권 보호와 교사 등 타인의 인권 존중에 힘쓰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함
- ☞ [쟁점] 학교가 아닌 보호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바람직한가와 관련하여 긴장이 존재. 일례로 지난해말 조선일보에서는 조례를 비판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로 '학부모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인권교육을 받으라는 오만한 조항이 삽입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학생인권 보장이 교사에게 '금지 목록'을 부여함으로써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삽입
- ☞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공통의 기반 위에 서 있음을 강조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차별 사유의 '예시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관련 규정의 17개 사유에 더하여 학교 내 차별양태를 고려한 징계, 성적 등을 추가
- ☞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열독실 운영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기능
- ☞ [보완] 그 외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차별 사유 예시 규정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체벌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한 형태로 바라보고 금지

☞ 체벌 금지는 교육당국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이미 체벌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도 존재.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연구용역팀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교사가 체벌의 대안으로 상담기능의 확충 등을 꼽음

☞ [쟁점]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체벌을 '허용'한다고 흔히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체벌 금지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이른바 '교육적 체벌'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체벌 사건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방식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 [쟁점] 체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 편차가 상당함. 체벌 금지와 관련해서 '무릎을 꿇리는 것도 못하는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함.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이 조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적 의무를 다시금 확인하는 한편, 교사가 아닌 학교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삽입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교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현실이 존재. 교총이나 전교조로 들어오는 '교권 상담'의 상당수가 안전사고의 책임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호소하는 내용. 따라서 이 조항은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를 동시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근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용,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강제동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 교육과정의 편법 운용이나 행사 참석 강요는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인권과 교사 권리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 ☞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산업체 파견된 현장실습생이 교육적 성격의 현장실습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의 건강, 안전, 노동,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삽입. 그러나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의 구체적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함
- ☞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책임을 명시. 학습 어려움의 예시를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이라는 한계가 존재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2항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야자, 보충 강제를 금지하고 있음. 강제 교육은 동의에 반한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학생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학습부담을 강제한다는 점에서도 인권침해라고 바라본 것임
- ☞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정규 교육활동의 다양성 보장 의무를 명시
- ☞ 현재도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선택권 보장'이 교육당국의 방침임.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동의가 아니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있음. 조례를 통해 선택권의 주체가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라는 점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음
- ☞ [쟁점] 이 조항은 흔히 사교육을 부추긴다, 학습분위기를 훼손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의사는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이미 사교육 참가는 보충·야자를 빠질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있음. 공교육에서 제공되는 정규교과 외 교육이 학생에게 매력적이고 진정한 동의에 기초한다면, 학교에 남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학습분위기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봄. 또한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런 비판은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임.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학생들 다수도 과중한 학습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됨. 이런 현실에서 선택

택권 보장만으로는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의 여건을 만들어내기 힘들. 따라서 학습권에 이어 휴식권도 동시 보장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학습 부담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학생 인권이 상대적으로 잘 존중되는 나라에서는 학생의 학습 부담 시간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을 놀이나 문화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복장, 두발 등에 있어서 각자의 개성에 따른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특히 두발 길이에 있어서는 규제를 아예 둘 수 없도록 함. 실제로 두발 길이와 관련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학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두발길이 자유란 학생들이 머리를 기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짧게 자르든 길게 기르든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이 조항은 복장, 두발의 전면 자유화를 강제하는 것은 아님. 파머, 염색 등은 학교규정으로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임. 교복 착용도 학교규정을 통해 가능. 다만 복장, 두발 등을 규제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학생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를 통해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참점] 두발, 복장 자유와 관련해서는 탈선 우려,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그러나 탈선, 학습 분위기 훼손은 복장, 두발과 무관한 요인이 주요 원인. 또한 두발, 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문제는 교복 착용이 불허된다는 오해로부터 주로 제기된 비판이기도 하고, 교복을 착용하더라도 빈부격차를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존재하는 불평등을 가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문임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

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 전체 학생을 범죄인 취급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 사적 기록물 열람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교육목적상 필요'와 '필요 최소한의 정도'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 그러나 '교육 목적상 필요'가 무엇인지가 모호
- ☞ CCTV의 경우에도 설치의 정당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설치 여부나 장소 등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 [쟁점] 학교마다 금지하는 개인 소지 물품의 목록이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음(예: 악세서리 전면 금지 학교도 있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악세서리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규제를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이 조항에서는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 물품 소지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함. 따라서 학교마다 어떤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 ☞ [쟁점] 대표적으로 휴대전화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심각. 현재 휴대전화에 대한 규정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임. 학급단위 자체 규칙에 맡길 뿐 학교단위의 규정이 없는 학교도 있는 반면, 수업시간만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사용·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교, 쉬는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 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학교도 있음. 최근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휴대전화 학교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 금지 교장단 결의 등이 있기도 했음(휴대전화 금지 조례 제정이 유보된 것은 휴대전화의 호신 기능, 학습 도움 기능 등에 대한 호소가 일정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 휴대전화 소지·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학습 분위기 훼손, 교사 수업권 침해, 휴대전화 중독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이미 중요한 통신수단이자 호신 수단(위급한 상황에서의 연락, 폭력 상황 촬영 등)이 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음.
- ☞ [쟁점]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또 설치 가능 장소, 운영 시간, 녹화 테이프에 대한 접근권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적 공개, 수업료/급식비 미납 공개, 박음질된 이름표 착용 강요 등을 금지

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 개인 정보의 열람/변경/삭제 요구권, 징계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권 등을 보장
- ☞ 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A안]

-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B안]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학생의 사상/도서 검열(학생회장 공약, 외부 활동, 소지 도서나 신문 등), 강요된 진술서와 반성문 작성, 서약서 제출(신입생 선서, 순결서약,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등), 종교 강요 등의 관행을 금지
- ☞ 종교 강요 금지의 내용은 애초 교육부 지침으로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로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지침을 제정토록 하였음. 종교 강요 금지를 조례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의 위상을 상향 조정하는 의미가 있음
- ☞ [쟁점] A안에 규정된 사상의 자유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상’을 곧 특정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알레르기성 반응, 헌법에도 없는 규정을 조례에 포함할 수 없다는 비판 등이 제기. 또 학생이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음. 따라서 B안에서는 사상의 자유라는 용어를 빼는 대신, 사상·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길을 택함
- *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양심을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 [쟁점] 애초 ‘초안’에서는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서약서’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는데,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반성문 작성도 금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에 최종안에서는 반성문이라는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이나 양심에 반하는 반성 강요’가 금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잘못에 대한 성찰과 교육적 소통은 중요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

고 보

[A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B안]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의 의사 표현, 언론 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피켓팅, 전단지 배포, 교내외 집회, 모임 결성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 A안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언급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B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수업시간 외에 가능토록 하고, 학교규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B안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쟁점]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학생을 운동권 만든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는다, 교육을 정치화한다 등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 조항은 김상곤 교육감도 가장 부담스러워한 조항이었음. 그러나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도(학생조회는 집회에 포함됨), 학교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부풀려진 것임. 학생들 중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민주적, 역동적으로 가동된다면, 굳이 집회까지 준비할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임.

☞ [쟁점]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A안이 B안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는 단순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음. 물론 집회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반발 때문에 B안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은 사실. 그렇지만 B안은 A안에서 후퇴한 것이고, A안이 더 훌륭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도 없음. 애초 '수업시간 외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조항은 학생에게 없었던 집회의 자유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했던 집회의 자유를 '좁혀서 보장'하는 것이었음(수업시간에는 왜 집회를 해서는 안 되는가?). 또 A안이 말하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학교규정으로 둘 수 있는 조건'이 의미가 모호하여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더

육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음.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 [보완] 학생자치기구의 권한을 좀더 구체화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구의 구성, 의결 범위, 지도교사의 개입 범위, 예·결산, 학교운영 참여 범위 등 현재 존재하는 제한 요인들을 두루 살펴 보완할 필요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현재 초·중·고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음.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나, 지켜지는 학교가 많지 않음. 따라서 조례를 통해 학생의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나아가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49조 참고)를 조례를 통해 두고자 함

☞ [보완]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 보장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학생자치기구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권, 현장 의견 제출권, 의결권 등 보장 여부를 관련 법을 추가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제20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학생자치기구, 학생대표는 물론 학생이 개인적으로, 또는 모임을 통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쟁점]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발언권 역시 상위법에 없는 권리를 창설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권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 운영과 정책결정 참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참여의 기회야말로 가장 유효한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점, 학생의 참여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학생들이 성숙한 판단 능력과 책임 능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숙론은 참여권을 부정할 명분이 되지 못함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상담 등 지원을 받을 권리,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우선적 예산 배정, 관련 제도의 정비,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보호자 대상 교육 등을 명시

☞ 보호자에 대한 교육,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현장 교사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 현재 학생 지원 과정에서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학교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설 관련 욕구들을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라는 개념 아래 포괄하여 보장

제23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

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개인적 문화활동은 물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요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권리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시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전한 급식뿐 아니라, 급식 관련 정보 접근권과 의견 표명권을 명시. 직영급식, 의무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위한 노력 의무 조항도 삽입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생리공결제를 조례 수준에서 권리화하는 한편,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더욱 절실한 지역인데도 보건실조차 없는 소외지역 학교를 고려하여 보건실 확충 노력 의무를 명시

☞ [보완] 보건실 확충 노력을 학교와 더불어 '교육감'에게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학생 건강 정보나 보건실 이용 규정, 보건교사의 역할, 학생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건강 관련 조치(금연침 시술 등) 등과 관련해서도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 필요

☞ [보완] 건강 향상을 위해 학교가 말아야 할 조치, 특히 임신한 학생, 질환을 가진 학생 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학생 징계 과정에서 적법성 보장을 명시적으로 요구. 나아가 학생 징계가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
- ☞ 학생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변론권을 더욱 강화하여 보장.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에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변론권만 보장되어 있을 뿐임
- ☞ [쟁점]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인 만큼 조례를 통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상벌점제의 벌점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는 상벌점제가 아직 시범단계에 있고 차차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해 상벌점제를 성급히 금지하다 보면 많은 반론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벌점제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도의 규정으로 합의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 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학생의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 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보완] 학교 안 소수 학생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루 반영하여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조치(예: 노동인권상담 등을 받을 권리), 운동선수를 위한 학습권 보장·폭력으로부터의 보호·합숙소의 환경 등에 관한 조치 등이 보완되어야 함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에 관한 홍보, 교육 의무화. 학생 대상 교육은 학기당 2시간, 교원 대상 학생인권 연수는 연 2회 실시를 명문화. 보호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 또는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함

☞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매년 실태조사, 3년 단위의 실천계획 작성, 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 등을 위한 20명 이내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학생인권옹호관이 당연 포함되는 일종의 전문가 위원회), 100명 이내의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학교 평가에 반영, 시민활동 지원과 협조 등이 규정됨
- ☞ 학생참여위원회의 경우,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추천 선발 방식을 택함. 또한 정원의 1/5은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5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

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행정감시기구인 옴부즈퍼슨(Ombuzperson)제도를 원용,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조사, 시정 권고하고 예방하는 권리구제기구로서 3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학생인권옹호관제도 도입. 5인의 학생인권옹호관은 각각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되(독임제 기구로 활동), 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주요 사안은 옹호관회의를 통해 합의하도록 함

☞ 5인의 옹호관만으로는 학생인권 사안을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산하에 사무국을 두는 한편,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함

☞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하여야 함

☞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유사. 강제조치는 취할 수 없음. 또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는 두지 않는 대신, 시정권고를 이행·보고하고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학교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여, 학생대표와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부칙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조례 발효 이후 6개월 이내 구성되어야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10문 10답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2009년 10월)

1.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만 생각하다 보면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학교생활이 즐거워야 공부도 즐겁고, 공부가 즐거워야 몰입도 가능하겠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가고 싶은 공간으로, 폭력이나 차별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학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도, 면학분위기도 한껏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규제 일변도로 학생을 통제한다고 해서 공부에 대한 몰입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를 갖고 몰입하기를 원한다면 통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발규제를 없애면 공부는 안 하고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될 거라고 우려하시지만, 이미 많은 대안학교들과 몇몇 일반학교의 선도적인 실험으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적이지 않은 우려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려 규제 일변도로만 가다보면 학생들이 더 머리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억눌리는 지점에서 더 자극을 받는 법이니까요.

☞ 공부라고 하면 교과 공부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사람살이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리고 인권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익힐 때 가장 잘 학습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과나 도덕과 등의 교과에서 인권의 가치와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시민이란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자유로운 사람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인권에 대한 공부는 시끌시끌한 공부입니다. 조용한 시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권에 대한 공부도 시장처럼 시끄러워야 제대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적, 정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이고,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권 교육을 열심히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수업 방해 행동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2. 우리 학생들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도록 의무에 대한 교육이 먼저이지 권리가 먼저 주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 학생들이 인권을 서툴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가 되시나 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방임하거나 무책임한 존재로 기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와 방임, 의무와 무책임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그 길,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걸어가지 않아 좁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길을 확장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인권을 배우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나 갈등이 빚어질지도 모릅니다. 학생들만큼이나 교사들에게도 인권은 아직까지 충분히 경험되지 못한 가치이기 때문에 서투름이 부르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 없듯이, 학생도 교사도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학생도 교사도 인권에 대해 성숙할 수 없습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자기 가정을 꾸린 이후 고스란히 폭력을 대물림하듯이, 인권을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이 없는 교육'은 질서정연해보일지 몰라도 학생들의 영혼에 대한 보살핌은 없는 교육이 아닐까요? 스스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교육이 아닐까요?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도 하겠지만,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아볼 것입니다. 인권교육은 권리 주체들의 인식과 힘을 키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동시에 길러줍니다. 인권교육과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 함께 간다면, 우려되는 혼란과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인권은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권이 부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권리가 주어질 때 책임 또한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 안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학생에게는 인권이 더욱 필요합니다.

3. 학생들 사이에 장난으로 인한 사고도 많고 폭력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통제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요?

☞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로서는 당연히 제기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 가운데 학생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 성적이나 생활을 비관한 학생 자살,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등일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사의 경우 종종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십니다. 보호자의 경우 학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불만을 터뜨리십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방임 내지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를 강화

한다고 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드시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일일이 규제하고 훈계해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장난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고삐를 죄고 뽕뽕 묶어두고 울타리를 친다고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외려 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널찍한 목장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기와 타인의 몸을 돌볼 줄 아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일일이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학생은 자기 몸은 물론 타인의 몸을 제대로 살피고 돌볼 줄 모릅니다. 교사가 아무리 일일이 살핀다 하더라도 매순간 모든 학생을 살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과 예방교육은 학생의 안전뿐 아니라 교사의 업무 피로도와 부당한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4.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건 교사들을 문제집단으로 보기 때문 아닌가요? 요즘 과잉체벌 교사처럼 간 큰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학생들 인격 존중합니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교사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교사의 과잉 생활지도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국제인권기준에서는 교육권의 본질적 요소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학교규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 인권의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어야 할 인권을 좀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교사들이 문제집단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학생인권의 지지자이자 옹호자로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사 전체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교사 개개인의 인식과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법과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고 나면, 종종 교사 집단 전체가 비난을 받곤 합니다. 학생인권이 무시된 사례를 보면 해당 교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구조나 '군사부일체'로 대표되는 사회의식의 문제가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구조와 사회의식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학생인권이 무시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사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조례 제정에 적극 지지를 표하고 나서주신다면, 오히려 교사 전체를 문제집단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학생 지도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 시민,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권리를 당당하고도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당연히 교사들에게도 즐거운 학교일 것이고, 교사들의 자긍심이 지켜질 수 있는 학

교일 것입니다.

5. 학생인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학생인권만 얘기하고 교권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당하는 교사들도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교사들도 상처받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권한 또한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권보다는 의무가 먼저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리를 행사하면서 배우고, 참여하면서 책임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당혹스런 상황이 간혹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생이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학생들도 두려움 때문에 교사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 교사에게 상처주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생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교사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기보다는 '권력자'로 보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강자는 상처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사를 괴롭히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즐기는 학생의 경우는 '강자'에게 도전함으로써 주위 학생들에게 힘을 과시하고픈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여교사 등 약해보이는 교사들이 주로 그런 학생들의 표적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동등하지 않은 관계'가 문제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변화하고, 교사의 인권에 대한 존중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교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학생은 몸이 아픈 환자에 비유해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아파서 몸을 뒤트는 과정에서 의사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해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를 부러 괴롭히려 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몇몇 학생들이 보이는 공격적인 행동도 어쩔면 아픈 환자의 뒤틀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나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뿌리를 건드려야지 교권을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나쁜 행동'은 더 약한 사람에게 옮겨갈 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교사의 뜻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의 행동을 죄다 잘못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뜻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교사의 뜻이나 인권기준에 어긋나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당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학생인권을 신경 쓰다 보면 요즘처럼 거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책임도, 지도할 권리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니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지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지도'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상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인권은 몸에서 떼어낼 수 없지만,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정,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생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학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학생 지도'와 학생인권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 '지도'라는 말에 대해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교사는 늘 옳다는 전제 하에서 학생을 '지도'하려다 보면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지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교칙(학교생활규정 등) 역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한 학생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때, 학생인권 존중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교칙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교사가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면, '지도'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준수와 책임의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위협에 처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을 때 그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이때 행사되는 힘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힘이니까요. 다만 학생의 위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교사마다 다를 수 있고,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제압이 가해지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역할입니다.

7. 학교현실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 지도의 책임이 교사에게만 내맡겨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인권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란 말입니까? 그럼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입니까?

☞ 수업시간에 교사 혼자서는 대처하기 힘든 난감한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요. 그래서 대다수 교사들이 차이도 크고 갖가지 사연을 가진 다수 학생을 동시에 수업에 집중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계실 겁니다. 다른 지원책 없이 교사 개인의 역량이나 통제방식에만 내맡겨두고 있는 학교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자주 만나 뵈었습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행동을 그냥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개개인의 책임만 늘어가는 방향을 지향하지 않을 겁니다. 학생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 역시 수업에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수업시간에 자거나 돌아다니는 학생이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돌봄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교육의 기본이겠지요. 한 선생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한 학생이 자기 수업시간마다 자고 있기에 앞으로 불러내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포기한 듯해 보이는 그 학생의 모습이 한심해보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홀어머니와 함께 새벽 바닷가에 나가 고깃배에 잡힌 생선들을 껌짝에 담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새벽일을 하고 학교에 등교하니, 1교시 수업에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연을 알고 나서 그 선생님은 그날로 체벌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판단하는 자기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통감하셨던 것이지요. 이 사례에서처럼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고, 수업방식이 그 나이의 특성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고, 다른 일로 고민이나 불안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연을 읽어보지 않고 무조건 집중을 요구하고 행동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 이면의 마음을 읽었을 때 다양한 대처법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교사의 역량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 교사 혼자서 대응하기 힘든 학생의 문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는 학교 차원에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담을 것입니다.

8.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인권 이야기하는 소수 학생의 의견만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단위에서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규정을 정해나가면 되지,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 교사, 학생, 보호자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너무나 반갑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일환으로 단위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도 적극 독려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적극 독려하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교육3주체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만,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인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선으로 지켜져야 할 학생인권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단위 학교에서의 자발적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학생인권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더라도 고문수사, 불공정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은 기본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또한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학생이 소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의 학생이 침묵하고 있고 소수 학생만 인권 주장을 펼친다고 해서 다수의 학생이 인권에 관심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안 됩니다.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침묵은 학생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학교 상황이 낡은 결과이지, 학생인권 보장을 미뤄두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아직 인권에 대한 이해나 욕구가 깊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내던져서도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소수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인권이 돈독히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9. 우리 교육의 방향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아닐까요?

☞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규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구체화함으로써 학교가 고려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교 단위의 자율성은 분명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단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칙 제정 등 학교 단위의 자율권은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는 규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각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에는 구제기구 설치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바깥에 구제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 안에서 조용히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까지 밖으로 알려져 학교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구제장치가 없는 인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권리구제기구들이 설립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나 학생을 지지하는 교사, 보호자 등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학생인권조례에는 꼭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제장치의 구체적 형태나 절차, 학교 바깥에만 설치할지 학교 안에도 설치할지 등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학교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학생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고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진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칭찬 받을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학교 안에서의 자발적인 해결 노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사건이 숨겨지거나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고, 학교 안

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公的) 기구는 요구됩니다.

☞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는 과정인 만큼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은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에 그칠 것입니다. 또한 그 혼란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기 위해서도 학교 밖 권리구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 구제기구의 존재를 혼란을 야기하는 훼방꾼이라고 보지 마시고 학생인권 보장을 지원하는 협력자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참고자료 4]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2010년 1월 1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저희 자문위가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시고 보완 지점을 짚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희 자문위는 초안에 대한 관심과 논쟁 덕분에 우리 사회가 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위원회는 1월에 예정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 경기도 교육위·의회와의 간담회, 서면·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하여 최종안을 만들어 김상곤 교육감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자문위가 마련한 초안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잘못 부풀려진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은 저희 자문위가 가진 부동(不動)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향후 조례안을 둘러싸고 진행될 논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자 발표하는 것입니다.

1.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인권 보장은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인권은 응급환자에게만 공급하는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사람이란 누구나 매일 흡입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권 보장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애당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현실세계에서는 언제나 늦게 시작해서 더디게 진행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 그동안 학교 현장에는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왔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어린 학생들의 외침이 우리 어른들의 심장을 두드린 지도 오래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응당 보장했어야 할 권리를 한참이나 뒤늦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요구가 없더라도 인권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인 만큼, 모든 교육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권에 관한 한 학생도 교사도 관리자도 보호자도 모두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성숙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입니다. 성장은 성장할 기회에 초대받고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을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인권 보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준비가 부족한 학교현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준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학생인권조례는 반(反)교육이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국제사회는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교육이 인권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친화적 교육이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교육 △질 좋은 교육, 그리고 △학생이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학생의 관심과 소질, 성숙 정도 등에 따라 교육적 자극이 주어져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교육은 폭력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설계하자는 제안이지, 교육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요소들을 거둬내고자 합니다.**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교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사에게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지 않을 때 어떻게 창조적인 학습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의 삶에 대한 보살핌이 있는 학교, 참여를 통한 변화를 성취하는 경험이 제공되는 학교,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열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자 교육구성원 모두가 염원하는 학교의 상이기도 합니다.

-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주어질 때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방종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부당한 통제나 일방적인 지시를 거둬낸 자리에는 대화와 소통이 쉼트게 마련입니다.**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소통의 과정은 교육적으로도 가치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글로벌 창의 인재'는 '글로벌 창의 교육'에 의해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창의 교육의 초석은 자율성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자율과 획일에 길들여진 학생들을 자율과 다양성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지도가 불가능해진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학생인권조례는 정당한 교권 행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반면 폭력과 강제, 차별에 기반한 교권 행사와는 단호히 결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부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권 행사로 교사 전체의 자긍심과 권위가 깃뻛힌 사례들을 여러 차례 목도해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불미스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교권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자의성(恣意性)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당한 기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개인의 인격에 내맡겨둘 수 없기에, 사회에 법이 필요하듯 학교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지도가 정당한 기준에 충실하게 행사될 때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방식으로 21세기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할 때 엇갈림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욕적인 처벌이나 강요가 학생들의 반감을 사는 것도 당연합니다. **교사의 지도나 교권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사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교육적 만남과 지도 방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교사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히 ‘No!’라고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위협에 빠뜨리는 학생이 있다면 마땅히 제지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지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힘이 행사되거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살핌이 자의적으로 철회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 부적응이든 공격성 증가든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을 살피고 대처방안을 기획하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창조적 역량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 교사들이 학생들 머리나 치마 길이를 재러 다니느라 바쁘고, 학생들에게 반강제로 동의서를 받아내 야간자율학습에 남게 하고, 과반수 이상이 옆드려 자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교권 추락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창조적 역량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정당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요청됩니다.

4.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 누군가 불공정거래 규제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이나 과속규제가 운전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할 기본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두 법 모두 학교와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같은 상위 법규를 학교현장에서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한 하위규범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 상위 법규도 부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학생인권조례는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헌법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구체화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학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상위 법규와 그 법규에 따른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5. 몇 가지 쟁점 조항에 대하여

- 학생인권조례는 총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빚어진 논란의 대상은 일부 조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우려만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전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열악한 학생인권 현실과 조례 제정을 희구해온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가혹하게 들립니다. 더불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우려도 부풀려진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두발 길이 자유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두발의 전면 자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두발 길이 제한만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12조 1항). 또한 그 밖의 두발 제한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2조 2항). 그동안 두발단속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불만만 끊어올랐던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순하게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두발 지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학생들이 그 규정의 존재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엄격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따르느라 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도 그 규정을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그 바람에 교사의 권위도 서지 못했습니다.

- 두발 제한이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두발에 오히려 집중됩니다. 두발 단속을 피하느라 등교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머리를 자르느라 공부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두발 제한이 오히려 면학 분위기를 흐뜨려온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두발을 풀어주면 탈선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불이 났기에 연기가 나는 것인데도 '연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진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복장 자율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교복, 양말, 신발 등 복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이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학생 참여 등 민주적 절차를 밟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12조). 이는 교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상당수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교복 착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구성원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교복 착용을 단위 학교별로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양말 색깔, 신발 모양, 교복 바깥에 입는 외의의 착용 여부나 색깔까지 정해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추느라 학생과 보호자는 없는 신발이나 외투를 사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또 여학생의 경우 바지 교복은 입지 못하게 하거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복장규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는 교육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3)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17조 2항)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집회장소나 물품 등에 대한 규정이나 신고절차 규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의 하나입니다. 자문위 초안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뿐이며, 다만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면, 학생은 인간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는 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학생들이 집회를 열게 되면 학교가 혼란에 빠지거나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나친 추측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인 정치 이슈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발언하거나 행동할 것입니다. 반면, 학내에서 집회를 연다면 학교를 대상으로 할 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내집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여는 것이 우려된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절차가 잘 돌아가면 됩니다.** 자문위 초안이 17조 1항에서 먼저 학생들의 의사 표현권을 보장하고, 뒤이어 2항에서 학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항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2항의 권리를 학생들이 굳이 꺼내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 **학내 집회 자유 보장으로 학생들이 '정치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정치를 정규 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정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정치적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나의 정치적 공간입니다. 더구나 학생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표현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것이 '정치화'라는 딱지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4) 반성문 강요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에게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16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생각을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갖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교육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몇몇 학교에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진술서가 아니라 교사가 불러주는 대로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학생·보호자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바로 이런 불합리하고 반교육적인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과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이 조항은 결코 학생들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반성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반성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만드는 행위, 학생의 자기 성찰과 교사와의 교육적 소통은 사라진 채 억지로 쓰인 '반성문'만이 교육이 이루어진 증거인 양 남아 행세하는 비교육적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5)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10조 1항)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미 교육당국이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원하는 학생은 남아 공부할 수 있고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실제로 '동의'한 것도 아닌데 동의한 것처럼 일괄 동의를 받아내는 일은 상당히 비교육적인 일입니다. 이런 기만을 목격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정규교과 외 학습을 강요당할 때 학습 효율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 체벌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체벌이 금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도 포함됩니다.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상해나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교육이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 체벌을 교육이라고 우기는 일은 없습니다.

-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체벌을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몽둥이나 손찌검, 발길질을 행하는 일부 교사의 자의(恣意)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에 대해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교사들도 상담이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될 때 체벌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폭력의 가장 무서운 효과는 그 폭력이 내재화되고 악순환 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솔선 수범하여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 학생 간 폭력을 예방, 근절하려는 교육적 지도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폰의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13조 4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지는 보장하되 수업시간 중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 휴대폰은 이미 대다수 학생들에게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호신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갈등이 불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휴대폰을 압수했을 경우 그 보관 기간과 돌려주는 방식도 해당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8)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에게 학교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20조 1항)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타인과의 소통 및 조율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유엔이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바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의 참여를 가로막음으로써 성숙의 기회를 차단해온 기존 학교 모델'로부터 '학생의 참여를 통해 성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권한에 걸맞게 깊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학생이 있더라도 권한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정신 아닐까요.

6.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념 공세에 대하여

- 마지막으로 저희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좌파 교육'이라거나 '운동권 주장'이라거나 특정 단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거나 하는 이념 딱지를 붙이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좌파나 운동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의 기준으로 합의하여 인류의 양식이 된 '인권'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맹비난하는 것은 인권의 반대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자문위는 특정 단체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인권전문가와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복무해온 교장·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위 전체의 명예를 걸고 단호히 부정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 공약이었고, 김 교육감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30일 자문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는 가운데 조례 초안을 합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주민 직선 교육감이 공약을 이행한 것을 두고 재선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경기도민의 박수를 받아 교육감이 재선에 이른다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잘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표를 보낸 주민들의 선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저희 자문위는 부당한 억측이나 이념 공세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이 잘못 흐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이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델을 고민하는 계기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1.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